

제4회 원규심의위원회

2015. 10. 22.(목)

심 의 안 건

서울연구원

The Seoul Institute



순서

1. 징계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(안)	1
2. 운영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(안)	4
3. 내부감사규칙 일부개정(안)	6
4. 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(안)	8

징계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[안]

1. 의결주문

징계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.

2. 제안사유

- 공무원행동강령 및 서울시 징계규칙에 부합하도록 강화된 징계양정 세부기준 및 청렴의무위반 징계양정기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징계양정세부기준 및 청렴의무위반 징계양정기준 신설
※ 신규 징계양정기준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입찰비리 및 불공정 행위	없음	신설
채용비리 연루	없음	신설
직무 및 대가, 수수금액을 불물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	없음	신설

4. 시행일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-1> 징계양정 세부기준

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							개 정 (안)									
구 분	징 계 사 유	징 계 기 준						비 고	구 분	징 계 사 유	징 계 기 준						비 고
		파면	해임 이상	강등 이상	정직 이상	감봉 이상	견책 이상				파면	해임 이상	강등 이상	정직 이상	감봉 이상	견책 이상	
1. 복무 및 품위	5.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																
	가.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						○						○				
	나.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						○						○				
	다.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						○						○				
	라.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						○						○				
	마.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,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						○						○				
	바.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의 금지의무 위반행위						○						○				
	사.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						○						○				
	아.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						○						○				
	자.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		○						○								
	차.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						○						○				
	<신 설>												○		발생시 전보조치		
	6. 감사거부 및 방해																
	가.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한 경우						○						○				
<신 설>																	
<신 설>																	
1. 복무 및 품위	5.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																
	가.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						○						○				
	나.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						○						○				
다.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						○						○					
라.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						○						○					
마.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,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						○						○					
바.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의 금지의무 위반행위						○						○					
사.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						○						○					
아.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						○						○					
자.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		○						○									
차.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						○						○					
카. 입찰비리 및 불공정 행위												○	발생시 전보조치				
6. 감사거부 및 방해																	
가.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한 경우						○						○					
7. 인사비리																	
가. 채용비리 연루							○						비위채용자는 응시자격 박탈				

<별표 1-2> 청렴의무위반징계양정기준

신구조문대조표

현행						개정(안)								
징계사유	징계기준					비고	징계사유	징계기준					비고	
	파면	해임상	정직상	감봉상	견책상			파면	해임상	정직상	감봉상	견책상		
2. 금품·향응수수 등							2. 금품·향응수수 등							
가.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제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							가.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제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							
(1) 100만원 미만				○			(1) 100만원 미만				○			
(2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수동)			○				(2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수동)			○				
(3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능동)		○					(3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능동)		○					
(4)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		○					(4)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		○					
(5) 500만원 이상	○						(5) 500만원 이상	○						
나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·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						1. 100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 요구, 정가상습 수취 알선시: 해임상	나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·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							1. 100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 요구, 정가상습 수취 알선시: 해임상
(1) 100만원 미만(수동)				○			(1) 100만원 미만(수동)				○			
(2) 100만원 미만(능동)			○				(2) 100만원 미만(능동)			○				
(3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		○					(3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		○					
(4) 300만원 이상	○					2. 고의·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 중에 따라 가감	(4) 300만원 이상	○						2. 고의·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 중에 따라 가감
다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							다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							
(1) 100만원 미만		○					(1) 100만원 미만		○					
(2) 100만원 이상	○						(2) 100만원 이상	○						
라. 위법·부당한 업무처리 청구로 금품증개행위			○				라. 위법·부당한 업무처리 청구로 금품증개행위			○				
마.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증 개행위			○				마.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증 개행위			○				
〈 신 설 〉							3. 직무 및 대가 수수금액을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 한 경우				○			

운영위원회운영규칙 개정(안)

1. 의결주문

서울연구원 운영위원회운영규칙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.

2. 제안사유

- 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을 연구원 현행 직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운영위원회 구성위원 인원수를 현행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하고자 함.

4. 시행일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<u>10인 이내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내부감사규칙 일부개정[안]

1. 의결주문

내부감사규칙 일부개정[안]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.

2. 제안사유

- 반부패·청렴업무 관련하여 감사관으로 외부인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.

3. 주요내용

- 내부감사규칙 제3조(감사구분)에 외부인 감사관 임명 규정 신설.

4. 시행일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감사구분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-left: 100px;">< 신 설 ></p>	<p>제3조(감사구분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원장은 필요할 경우 반부패 청렴업무에 외부인을 감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.</p>

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[안]

1. 의결주문

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[안]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.

2. 제안사유

- 공용차량의 용도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연구원 전용차량 지원 대상범위를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차종별 용도지정 일부개정
- ‘차량을 이용한 출·퇴근 허용’ 신설

4. 시행일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
<p>제3조(차량의 구분) ① (생략)</p> <p>② 차량의 <u>차종·차형</u> 및 최단운행 기준은 <별표1>과 같다.</p> <p><별표1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차종별 차형 및 내구연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차 종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차 형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내 구 연 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승 용 (업무용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대형승용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 12만km이상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승 용 (업무용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중·소형승용차</td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12만km이상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승합승용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차 종	차 형	내 구 연 한	승 용 (업무용)	대형승용차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 12만km이상	승 용 (업무용)	중·소형승용차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12만km이상	승합승용차	<p>제3조(차량의 구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차량의 <u>차종·용도·차형</u> 및 최단운행기준은 <별표1>과 같다.</p> <p><별표1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차종별 차형 및 내구연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차 종 (용 도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차 형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내 구 연 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승 용 (전 용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대형승용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 12만km이상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승 용 (업무용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중·소형승용차</td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12만km이상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승합승용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차 종 (용 도)	차 형	내 구 연 한	승 용 (전 용)	대형승용차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 12만km이상	승 용 (업무용)	중·소형승용차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12만km이상	승합승용차
차 종	차 형	내 구 연 한																			
승 용 (업무용)	대형승용차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 12만km이상																			
승 용 (업무용)	중·소형승용차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12만km이상																			
	승합승용차																				
차 종 (용 도)	차 형	내 구 연 한																			
승 용 (전 용)	대형승용차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 12만km이상																			
승 용 (업무용)	중·소형승용차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12만km이상																			
	승합승용차																				
<p>제3장 차량관리 및 운행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< 신 설 ></p>	<p>제3장 차량관리 및 운행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제14조의1(차량을 이용한 출·퇴근 허용) 원장은 연구원 차량 중 전용차량에 대해 출·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.</p>																				